#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2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 박재호·양기대·김경협

박완주 • 이형석 • 양경숙

이해식 · 김주영 · 오영환

김진표 • 우원식 • 김수흥

오영훈 • 한병도 • 백혜련

김영배 · 김성주 · 홍영표

김영진 · 고용진 · 임호선

정일영 · 김민철 · 서영교

의원(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기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8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7호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 항에 따른 조합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한다.
  - ③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출연금 1조원
-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
  -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 에 대한 재정지원
  -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23조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1. 제23조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 2. 제23조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 ③ 각 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2조의2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3조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 지원계정심의위원회
    -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3조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조합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에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5조제 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

- 석 결과와 제28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 약(이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
| 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    |                          |
| 로 조성한다.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  |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       |
| <u>3호가목</u> 에 따른 금액 | 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         |
|                     | <u>목</u>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
|                     | · 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        |
|                     |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           |
|                     | <u>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소</u> |
|                     | <u>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u>   |
|                     |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          |
|                     | <u> 치한다.</u>             |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
|                     | 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        |
|                     | 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통해 지        |
|                     | <u>방소멸대응기금을</u> 관리·운용    |
|                     | <u>한다.</u>               |
|                     | ③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
|                     |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         |

<u><신 설></u>

<신 설>

<u>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u> 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 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출연금 1조원
  -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
  -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호 및 제

<신 설>

- 2호의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 원계정으로 구분한다.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23조 <u>각</u>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u>각</u>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u>다.</u>
  - 1. 제23조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 2. 제23조제2호의 용도로 운용

     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지원계정
  - ③ 각 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2조의 의2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2조의 의2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u><신 설></u>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 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한다.
-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3조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u>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u> 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3조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

<u>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u> <u>사항</u>

-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 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 ④ 조합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 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 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 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 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 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5

<u><신 설></u>

<신 설>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 5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심의를 할 경 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 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

 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7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 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 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신 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 제2조(적용기한) -----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

따라야 한다.

-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 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8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 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 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 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 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 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          | <u>2026</u>      |
|-----------------------------|------------------|
| <u>2년 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 | <u>년 12월 31일</u> |
| 다.                          |                  |